

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

*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금융투자협회

※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대상이 실물(Physical goods)인만큼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
1. 가격변동 위험

- ▶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- ▶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
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("KRX금시장"이라 함)을 의미하며,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(투자중개업자; 증권사·선물사)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.

2. 주요 거래제도

가. 매매거래 대상

- ▶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 1kg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
- ▶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(골드바)로서 순도, 중량, 브랜드,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

* 골드바(Gold bar) 품질 관리

-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: 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
-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: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만 거래

나. 매매거래단위, 호가수량단위, 실물인출단위

- ▶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, 1g당 원화(예 : 50,000원)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,000g(5kg)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.
- ▶ 실물인출단위는 1kg입니다.

다.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

- ▶ 매매거래시간: 10:00 ~ 15:00
호가접수시간: 09:00 ~ 15:00(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)
- ▶ 매매거래 개시 전 6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3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,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받습니다.

라. 호가의 종류 등

- ▶ 호가는 지정가호가(종목·수량·가격을 지정하는 호가)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(FOK : Fill or Kill) 또는 일부충족조건(IOC : Intermediate or Cancel)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.
- ▶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.

- ▶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.

마. 호가의 제한

- ▶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%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.
- ▶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.

바. 매매체결방식

- ▶ 시가·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,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(접속매매)방식으로 체결됩니다.
- ▶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매매목적·시간우선의 원칙,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.

사. 결제방식

- ▶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, 오전 및 오후 2회(11:30, 16:30)로 나누어 결제합니다.
- ▶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.

아. 실물 인출

- ▶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단위(1kg)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(예 : 1kg, 2kg, 3kg)

- ▶ 당일 15시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.

- *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실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, 인출 가능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*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(골드바)은 다시 입고하여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.

3. 거래방법

가. 주문의 방법

- ▶ HTS, FAX,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.
- ▶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 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(골드바)만 거래되므로,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**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** 가능합니다.

나. 위탁증거금 납입

- ▶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(**현금 위탁 증거금률 100%**),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.
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
가.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

- ▶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나.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

- ▶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(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**10%를 부가가치세**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다.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

- ▶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·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%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5. 기타

가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▶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(골드바)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	내 용
매매수수료	오프라인	0.45% (영업점/고객센터/스마트상담센터)
	온라인	0.15% (Qway)
출고수수료		1Kg당 2만원
기타수수료 (출고시 발생)	운송 수수료	내륙 : 건당 8만원 제주도 : 건당 25만원 ※단, 5kg 초과시 1kg당 3,000원 가산
	보관수수료	하루당 1만원 ※인수일 포함 4일째 되는 날부터 가산(휴일포함)
	재운송수수료	건당 4만원(5kg 초과시 1kg당 1,500원씩 가산) ※재수령 신청시 발생

※ 모든 수수료는 VAT 10% 별도입니다.

※ 보관수수료 및 재운송수수료는 고객이 출고 신청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령 지연시에만 부과

※ 한시적 면제 중인 유관기관수수료가 향후 부과될 경우, 상기 수수료에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나.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

- ▶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